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나565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피고,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2가단89541 판결

변론 종결

2005. 3. 18.

판결 선고

2005.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판결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가 제작·배포한 ‘타금융 2천만 원 이상 아파트 거주자’ 자료를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를 추출·가공·배포한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출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금융 기관의 대출정보에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가공하여 ‘피고의 고객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아파트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배포하여 대출 홍보 및 대출 권유에 활용하도록 하였던 것인바, 비록 피고 소속 보험 모집인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원고 등에게 실제 대출 전환 권유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추출·가공·배포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써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보험모집인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영리목적을 가진 사업자로서 통상 피고의 고객 신상정보 등을 접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모집인들이 현실적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한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피고로부터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일정한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피고 소속 임직원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피고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를 배포한 행위는 위 조항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



성이 있어야 하는데, 갑제5호증의 18, 22, 33, 37, 58, 61, 7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1. 2. 당시 대출금리를 낮추어 고객을 유치하려는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금리인하 및 설정비 면제 등의 상품가격 경쟁력 확보 및 CRM 기법을 활용한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의 일환으로 피고의 기존 고객들 중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아파트소유자들을 피고가 새로 마련한 ‘아파트라이트플러스담보대출’이라는 대출상품에 가입시킴으로써 피고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점, 더욱이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를 피고의 직원도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주로 외근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기, 목적과 수단, 방법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의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으며,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행위는 원고 주장의 정신적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수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나 소질을 발현하여 향유할 수 있었던 생활이익을 침해받은 데 대한 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단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주관적 감각 또는 인식의 문제로만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작성·배포한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에 원고들의 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로써 이미 원고들의 경제적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5-14

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의 가입 전환 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실제 그와 같은 침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국내 굴지의 조직을 갖춘 피고의 지위, 피고가 추출·가공하여 만든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그 배포의 방법 및 광범위성,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상적인 수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성기

판사 강성훈

판사 최수진 _____